

 국토교통부		<b>보 도 자 료</b>	
		배포일시	2019. 1. 7.(월) / 총 3매(본문2, 참고1)
담당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 과장 김근오, 사무관 윤광현, 주무관 남순두 · ☎ (044) 201-3674, 3695, 3678
보 도 일 시		2019년 1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월 7일(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산업입지 수급계획 '19년 지정계획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제1차관, 12월 27일)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16.~'25.)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 포함)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

□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16년~'25년)은 '16년부터 수립 시작하여 '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하였으며,

○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됨은 물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표]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

(단위: 천㎡)

시.도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17.12.	
면적	668	411	203	1,290	459	2,013	2,201			수립	
시.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8.12.
면적	0	547	424	446	2,015	1,796	1,776	2,313	10	378	수립

-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7.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며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되어,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되었다.
  -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 \*\* 경기23, 경남14, 충남13, 경북6, 충북5, 전남4, 서울1, 부산1, 인천1, 세종1
-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윤광현 사무관(☎ 044-201-36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 수급계획」이란?

- 시·도지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종합계획

\* 수립내용: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지역별·유형별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 지원사항, 산업단지 지정계획, 산업단지 재생계획 등

□ 「산업입지 수급계획」연혁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92년 중앙정부(건교부)가 수립해 오다가 '07년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는 등 총 3차례의 수급계획이 수립
-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16~'25년)은 '17년말 7개 지자체 수립완료, '18년 말 10개 지자체 수립 완료

□ 각 차수별 수급계획 개요

구분	계획기간(수립년도)	주요내용	비고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기간: '92~'96년 ('93.4월 수립)</li> <li>▪ 추가로 97년부터 01년 공급총량도 추정</li> </ul>	①공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수도권 공업집중 억제, 지방공업 육성등) ②첨단기술 산업 육성 및 지방산업 고도화 ③공업입지와 환경보전의 조화 *'92~96년: 49.3km <sup>2</sup> , 10년간('92~01년) : 114.4km <sup>2</sup>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기간: '02~'11년 ('03.6월 수립)</li> </ul>	①지역별 산업발전 추이 및 잠재력 수용 ②공급계획의 탄력성 및 실천력 제고 (과거 20년간의 변화 추이 감안한 추세치 분석등) * '02~11년: 106.3~120.0km <sup>2</sup> 공급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기간: '09~'18년</li> <li>▪ '08년 국토부 수립지침 제시 후 수립(지방이양) (2차 계획과 연동성격)</li> </ul>	①지자체 지정권한 이양('07.10월) 후 지자체 주도의 첫번째 수급계획 ②'08~09년 과잉공급으로 인해, '12년 국토부에서 수급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연도별 산업단지 적정 수요 고시 ③수급계획의 개편보다 적정수요 산정에 주관심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기간: '16~'25년 ('17년~'18년 수립)</li> </ul>	①수요추정 시 과다추정 방지를 위하여 계량화 및 검증이 용이한 원단위법, 추세분석법 우선 사용 ②계획입지비율을 시도 일괄 적용방식에서 시도별 계획입지 추세 대비 차등 적용	